

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

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5일
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시험일시: 2020. 12. 05.(토) 10:00 (※응시자 09:20까지 입실완료)

구분	직급	직렬	직류	시험과목수	시험시간(분)
공개경쟁	9급	시 설 관 리	기 계 시 설	3과목	10:00 ~ 11:00 (60분간)
			전 기 시 설		
			화 공 시 설		

※ 장애 등 편의지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(사전 신청자에 한함)는 종료시간 연장

2. 시험장소: 붙임 「필기시험 장소」 엑셀파일 참조

※ 별도 첨부한 '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현황' 파일을 열람하여 **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3. 응시자 주의사항

[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]

-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**시험장(학교) 출입을 전면 통제**합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,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.
 -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하고 입과 코를 함께 가릴 수 있도록 착용해야 합니다.
 - 단,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
-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니 개인별 마스크를 지참하시기 바라며, 분실 및 착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 소지를 권장합니다.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**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**합니다. 다만, **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기간 내에 사전 신청**을 해야 하며,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,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(단,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)

〈자가격리자 시험 신청〉

- 신청기간 : **11.30.(월) 09:00 ~ 12.03.(목) 24:00**
- 제출서류 : 자택(방문)시험 신청서, 격리통지서 사본
- 신청방법 : 이메일(soruji@korea.kr) 제출 / (문의) 인사과 인재채용팀 ☎ 032-440-2532
- ※ 자가격리 시험 신청자에게 시험장소 및 응시방법 등은 개별 안내
자가격리 사전신고자 중 격리해제된 경우, 일반시험실에서 시험 실시

- 증상이 의심되는 자는 사전 신고해야 하며, 사전 신고는 조사대상 유증상자*로서,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됩니다.

〈증상 의심자 사전 신고〉

- 신고기간 : **11.30.(월) 09:00 ~ 12.03.(목) 24:00**
- 제출서류 : 증상 의심자 사전 신고서,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 사본
- 신고방법 : 이메일(soruji@korea.kr) 제출 / (문의) 인사과 인재채용팀 ☎ 032-440-2532
- * **조사대상 유증상자**
 -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 -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 -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- ※ 증상 의심 사전 신고자에게 응시방법 등은 개별 안내(예비[별도] 시험실 등)

-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「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(붙임4)」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, 손소독 및 발열검사,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모든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.
- 격리대상자 응시 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해야 하며,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☎ 1339, 지역번호+120)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일반사항]

- 가산특전(취업지원대상자, 의사상자, 자격증)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**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**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, 교통편,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, 시험당일 **오전 9시 20분까지**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수험생 교육 방송을 청취하고,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(08:20 시험장 개방)
 - ※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**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**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의 하나)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 - ※ 응시표는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출력 가능
 -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『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』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, 반드시 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**(시험장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)하여야 합니다. 지정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결과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 - ※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를 OMR답안지에 사용할 수 없음
- 답안은 매문항마다 **반드시 하나의 답**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 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**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.
 - ※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,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
 -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,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 ■ ■ ■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

-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.
-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, **사용한 모든 답안지**와 **문제책**은 **비공개**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(시험장 별로 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있음)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
-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폰, 태블릿PC, 스마트시계,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,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**전원을 종료한 후**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, 시험시간 중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.
- 외부차량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**대중교통수단을 이용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배탈,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
 - ※ 그간 응시자 요청 시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배변용품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
-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 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, 시험장의 시험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-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인사과(인재채용팀 ☎ 032-440-2533~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4.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

가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제1항 위반행위

■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
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정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제2항 위반행위

■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5. 합격자 발표

-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20. 12. 28.(월)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. [<http://gosi.incheon.go.kr>]

붙임 1

자택(방문)시험 신청서(양식)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자택(방문)시험 신청서

□ 성 명 : _____

□ 생년월일 : _____

□ 응시번호 : _____

□ 지원사항(직렬/직급) : _____

□ 주 소

○ 주민등록주소 : _____

○ 방문시험주소 : _____

※ 방문시험시 실제 방문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곳

□ 연 락 처

○ 본 인 : _____

○ 가족 등 : _____

○ 기 타 : _____

※ 필기시험 방문수험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(2개 이상)

위와 같이 방문시험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일자 2020. . .

신 청 인 _____ (서명)

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증상 의심자 사전 신고서

□ 성 명 : _____

□ 생년월일 : _____

□ 응시번호 : _____

□ 지원사항(직렬/직급) : _____

□ 연 락 처

○ 본 인 : _____

○ 가족 등 : _____

○ 기 타 : _____

※ 시험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
연락처 기재(2개 이상)

위와 같이 증상 의심자임을 신고합니다.

신청일자 2020. . .

신 청 인 _____ (서명)

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